

급경사지 실태조사 위탁 사유서

□ 개요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불확실성으로 법정 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되지 않은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
 - * 부산 사하구 주택 매몰('19/4명 사망), 경기 평택시 공장 매몰('20/3명 사망), 경북 영주시 주택 매몰('23.6.30./영아 1명 사망), 세종 비탈면 붕괴('23.7.15./1명 사망) 등
- 이와 관련하여 국회, 언론 등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경사지 등록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필요성 지적
- 행정안전부에서는 '21~'23년까지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의 미관리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24년부터는 급경사지 실태조사 주체가 광역시·도로 업무 이관* 됨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수행 중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 시행 '24. 8. 14.

□ 위탁 필요성 및 근거

-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신뢰성, 전문성, 책임성, 신속성을 바탕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관리 급경사지 실태조사 및 제도권 편입 필요
-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붕괴위험지역 지정, 주민대피 및 정비사업 등을 결정하는 주요 절차로서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 도출 필요
 - 기존 관리 급경사지는 '23년 기준 약 2.5만개소 등록, 관리되고 있으나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등급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
 - * 최근 5년간 재해위험도 평가 등급 A~C등급에서 약 84% 가까이 피해가 발생함

<급경사지 안전 등급별 피해 발생 현황('18~'23년)>

구 분	계(건)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352	10	8	208	7	29	90
A등급	14	1	-	6	-	3	4
B등급	89	2	1	47	-	9	30
C등급	191	1	5	132	3	13	37
D등급	58	6	2	23	4	4	19
E등급	-	-	-	-	-	-	-

- 실태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하우(Know-how), 기술력 및 이력 등의 전문성을 갖춘 급경사지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업무 위임·위탁 필요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는 「급경사지법」 제32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급경사지 전문기관임(* 붙임 1, 2 참조)
 - '21~'23년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연구용역('21~'23년 전국 10,500개소 발굴) 등 지자체 실태조사 용역 다수 수행(* 붙임 3 참조)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는 「급경사지법」 제33조에 따라 급경사지 실태조사 위임·위탁 근거가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성을 확보 가능
 - 「급경사지법」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급경사지법」 시행령 제15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
 - 「지방계약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급경사지 실태조사 위임·위탁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
 - 하절기 식생 밀집에 의한 조사 효율성 고려 실태조사 사업의 기획, 발주, 수행 등 신속성 확보 필요

□ 위탁 대상

- 기관명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 디펠리체 1002호
- 사업자등록번호 : 505-82-12007

□ 관련 법령

○ 급경사지 실태조사 법적 근거

「급경사지법」 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법적 근거

「급경사지법」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4. 제13조의2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에 관한 도서(圖書)등의 작성·보급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급경사지법」 시행령 제15조의6(업무의 위탁)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 2.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시·도지사로 한정한다)**
 3.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의 실시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정한다)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④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임무 법적 근거

「급경사지법」 제32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 ① 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1.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된 연구단체
2. 급경사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공사 등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경사지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급
3.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 간
4. 급경사지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과 기술의 개발
5. 민간 주도의 급경사지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6. 급경사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7. 급경사지 분야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급경사지법」 시행령 제15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 법 제32조의2제5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급경사지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 및 정밀조사 등 현장조사의 실시
2. 신규 급경사지의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평가
3.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원인조사 등 현장지원
4.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술의 연구 및 개발
5. 국내외 급경사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6.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제 2020-15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2.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53, 504호
3. 대표자
 - 성 명 : 류지협
 - 생년월일 : 1967년 4월 17일
 -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360, 339동 1502호
4. 사업 내용
 - 급경사지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급
 -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 급경사지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과 기술의 개발
 - 민간 주도의 급경사지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 급경사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 급경사지 분야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 그 밖에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허가조건 : <별지> 참고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2020년 7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업무 활용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주요 업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계측 및 점검 등 급경사지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명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나. 근 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2

※ 협조사항 :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주요 업무 전파 조치

- 붙임 1.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업무 활용 요청(공문) 1부.
2.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업무 안내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산림청청(산사태방지과장), 서울특별시청(산지방재과장), 부산광역시청(재난대응과장), 인천광역시청(자연재난과장), 광주광역시청(자연재난과장), 대구광역시청(자연재난과장), 울산광역시청(재난관리과장), 대전광역시청(재난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청(재난관리과장), 경기도지사(북부재난안전과장), 강원도지사(재난복구과장), 충청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충청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전라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전라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경상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경상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재난대응과장), 북부지방산림청청(산림재해안전과장), 동부지방산림청청(산림재해안전과장), 남부지방산림청청(산림재해안전과장), 중부지방산림청청(산림재해안전과장), 서부지방산림청청(산림재해안전과장), 한국도지주역공사 사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인천교통공사 사장,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부산교통공사사장, 서울교통공사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주무관 **이동희** 기승서기관 **대강권오 12.2 차상하** 과장 전담

협조사

시행 재난경감과-4807 협수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533호 재난경감과(나성동)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5157 팩스번호 044-205-8931 / flyaway777@korea.kr / 대국민 공개

붙임 3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 실적

순서	발주처	과업명	사업비 (천원)
1	경상남도	2024년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614,900
2	충청북도	2024년 급경사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418,500
3	세종특별자치시	2024년 급경사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35,640
4	대구광역시	2024년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18,000
5	광주광역시	2024년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20,880
6	용인시	용인시 급경사지 재해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20,179
7	행정안전부	2022년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1,571,310
8	행정안전부	2023년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1,611,236
9	서천군	서천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실태조사 용역	7,348
10	예산군	급경사지 실태조사 의뢰	1,650
11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급경사지 실태조사 의뢰	550
12	거창군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따른 급경사지 조사 용역	4,702
13	행정안전부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462,000
14	광주순환 도로투자(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급경사지 실태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용역	990
15	광주순환 도로투자(주)	광주 제2순환도로 3구간 급경사지 실태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용역	10,890
16	예산군	급경사지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의뢰	1,650
17	광주 동구	급경사지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의뢰	1,100
18	광주 남구	급경사지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의뢰	1,100
19	경주시	급경사지 실태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	1,100
20	보령시	급경사지 실태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 의뢰	660
21	광양시	2023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조사 및 급경사지 실태조사	13,585
22	충남건설본부서부사무소	충남 예산군 궤곡리 급경사지 실태조사	550
23	고양시 덕양구	급경사지 실태조사 의뢰	1,100
24	청도군 건설과	청도군 이서면 구라리 급경사지 실태조사 의뢰	1,100